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대불비용 부담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22. 7. 21. 선고, 2018헌바504)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의료분쟁 발생현황, 대불제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・부과・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최근 5년간의 전체・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,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간이조정절차 대상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의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, 분만(分娩)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0. 24. ~ 1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3항 중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9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비상임으로 한다.

1.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
2.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
   가. 산부인과 전문의 3명
   나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
   다.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
   라.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
   마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

추천하는 사람 1명

④ 제3항제2호가목,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3천만원”을 “3억원”으로, “고려하여”를 “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대불비용”이라 한다)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불비용 재원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.

제27조제2항 전단 중 “원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(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을 말하며,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)”으로, 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”을 “최근 5년간의 전체ㆍ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, 예상 대불비용,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원장”을 “보건복지

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법 제47조제4항”을 “법 제47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원장”을 각각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6항 중 “원장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, “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”를 “보건의료기관개설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·부과·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법 제47조제5항”을 “법 제47조제6항”으로, “청구하여야”를 “청구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7조제3항”을 “법 제47조제4항 후단”으로, “편입하여야”를 “편입해야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7조제7항”을 “법 제47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이조정절차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

적용한다.

제3조(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대불청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지명·위촉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간이조정절차 등) ①·② (생 략)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.	제15조의2(간이조정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1천만원 ----------.
제18조(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(이하 “보상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, 비상임으로 한다. 1. 산부인과 전문의 2명 2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3.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4.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	제18조(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 11명----------.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.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비상임으로 한다. 1.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.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

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	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.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.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.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④ 제3항제1호,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	④ 제3항제2호가목,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제23조(보상금의 지급기준)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	제23조(보상금의 지급기준) ---------- 3억원----------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----------.
제26조(대불의 청구)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26조(대불의 청구) ----------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

	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)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(이하 "대불비용"이라 한다)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27조(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)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(이하 "대불비용"이라 한다)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·부과·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불비용 재원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·부과·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.
② 원장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.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	② 보건복지부장관(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·부과·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을 말하며,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) ---------- 최근 5년간의 전체·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

수 있다.	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, 예상 대불비용,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----------. ----------.
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국민건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.	③ 보건복지부장관----------. ----- 법 제47조제5항----------.
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	④ 보건복지부장관----------

출을 요청할 수 있다.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⑥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----------. ⑤ 보건복지부장관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⑥ 보건복지부장관----------보건의료기관개설자----------.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·부과·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.
제28조(대불금의 구상)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	제28조(대불금의 구상) ① ----법 제47조제6항----------

또는 보건의료인(이하 “구상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. ② 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(求償義務者)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.	---------- 청구해야 ------. ② ---------- 법 제47조제4항 후단---------- 편입해야 -----.
제29조(대불금의 결손처분)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9조(대불금의 결손처분) ① ------ 법 제47조제8항----------.
	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74